

『2021년 놀이학습공동체운영사업』 공모전 안내

2021. 9. 17.(금)

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·놀이 중심 보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
어린이집 보육의 질과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자
『놀이학습공동체운영사업』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이에 본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에 참여한
어린이집, 보육교직원,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

『2021년 놀이학습공동체운영사업』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□ 개요

- (공 모 명) 2021년 놀이학습공동체운영사업 공모전
- (공모기간) **2021년 10월 12일(화)~11월 2일(화) 13:00까지**
- (공모대상) 2021년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학습공동체운영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,
보육교직원(교사, 원장), 육아종합지원센터 / 기관 및 개인 당 1건 접수

구 분		대 상	비 고
<기관> 놀이학습공동체 1기, 2기 참여 어린이집	1기	2020년 교사학습공동체운영사업에 참여하여 2021년 원내공동체 소모임을 진행한 기관	※ 본 사업에 참여한 원장 또는 교사가 지원 서류 작성 ※ 어린이집으로 공모 참여 시 보육교직원 영역(교사, 원장) 중복 지원 불가
	2기	2021년 놀이학습공동체운영사업 참여 어린이집으로 참여 원장과 교사 <u>모두</u> 이수 기준을 충족한 기관	
<개인> 놀이학습공동체 2기 참여 보육교직원 (교사, 원장)	교사	2021년 놀이학습공동체운영사업 참여 교사로 이수 기준을 충족한 자	※ 보육교직원으로 공모 참여 시 어린이집 영역 중복 지원 불가 ※ 참여 어린이집에서 교사, 원장 각각 지원 가능 ※ 원내공동체 참여 보육교직원은 참여 불가
	원장	2021년 놀이학습공동체운영사업 참여 원장으로 이수 기준을 충족한 자	
<기관> 육아종합지원센터		2021년 놀이학습공동체 참여 센터	-

- ※ 놀이학습공동체 1기: 2020년 교사학습공동체 참여, 2021년 원내공동체 운영
놀이학습공동체 2기: 2021년 놀이학습공동체 참여
- ※ < 2021년 놀이학습공동체 2기 보육교직원 이수 기준 >
 - 교사: 일대일 컨설팅 2회 이상(사전 온라인 컨설팅 1회 + 현장방문/비대면 컨설팅 1회 이상),
교사 소모임 4회 이상 참여 ▶ 총 6회 이상 충족 요함
 - 원장: 원장 소모임 4회 이상 참여 충족 요함
 -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의 이수 기준은 사업 종료 시점인 2021년 10월 31일 안에
컨설팅 및 소모임을 진행한 경우 유효
- ※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영역 **중복 지원 불가**(개인 또는 기관으로 선택하여 지원),
기관 및 개인 당 1건 접수 가능
- ※ 놀이학습공동체 1기 참여 기관 중 2021년 원내공동체 진행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의 경우
'<기관>어린이집' 영역으로 공모전 참여 ('<개인>보육교직원' 영역으로 응모 불가)

○ (공모내용)

구 분	내 용
어린이집	놀이학습공동체운영 사업 참여를 통한 어린이집 내 적용 사례
보육교직원(교사, 원장)	놀이학습공동체운영 사업 참여를 통한 자기 계발 사례
육아종합지원센터	놀이학습공동체운영 사업 지원 및 관리 사례

○ (자료제출) 공모전 제출 분량 반드시 준수

구 분	내 용
어린이집	제출양식에 맞춰 5장 이내 제출 (A4용지/사진포함)
보육교직원(교사, 원장)	제출양식에 맞춰 3장 이내 제출 (A4용지/사진포함)
육아종합지원센터	제출양식에 맞춰 5장 이내 제출 (A4용지/사진포함)

○ (공모방법)

- 제출 서류를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대표 메일로 발송(gg1434@hanmail.net)
- 메일 제목 형식 :

구 분	제목 형식
어린이집	[기관] 00시(또는 00군)_00어린이집 놀이학습공동체운영사업 공모전
보육교직원(교사, 원장)	[개인] 00시(또는 00군)_00어린이집_000교사(또는 원장) 놀이학습공동체운영사업 공모전
육아종합지원센터	[기관] 00센터_놀이학습공동체운영사업 공모전

※ 메일 발송 시 제목 형식 반드시 준수

- ex. [기관] 부천시_경기어린이집 놀이학습공동체운영사업 공모전
 [개인] 부천시_경기어린이집_이경기교사 놀이학습공동체운영사업 공모전

○ (제출서류) 공모전 제출 양식 반드시 준수

구 분	내 용
어린이집	공모전 제출 신청서(서식1-1,1-2*),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및 초상권·저작권 동의서(서식2), 공모전 제출 양식(서식3) * 서식 1-1: 놀이학습공동체 1기 어린이집용(원내공동체 운영 어린이집용) 서식 1-2: 놀이학습공동체 2기 어린이집용 / 해당하는 서식에 기재
보육교직원(교사, 원장)	공모전 제출 신청서(서식4),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및 초상권·저작권 동의서(서식5), 공모전 제출 양식(서식6)
육아종합지원센터	공모전 제출 신청서(서식7),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및 초상권·저작권 동의서(서식8), 공모전 제출 양식(서식9)

□ 심사개요

- (심사방법) 서류심사 - 심사위원(보육전문가)에 의한 점수 합산 평가
*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, 담당 공무원, 학계 전문가로 구성

구 분	일 정
서류심사	2021년 11월 3일(수)~9일(화) 중
최종선정	2021년 11월 12일(금) 14시 이후 ※ 개별 공지 및 본 센터 홈페이지 공지 (정보마당>공지사항) ※ 수상자는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보고회 시 발표 예정
시 상	사업보고회 시 시상 예정(2021년 12월 중) ※ 수상자는 사업보고회(12월 중) 필수 참석

※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

○ (심사기준)

구 분	내 용
어린이집	- 본 사업의 참여 동기 - 참여교사 선정 및 지원 과정 - 놀이학습공동체운영 사업을 통한 어린이집 적용 및 활용·확장/변화 과정 - 향후 계획 및 활성화 방안
보육교직원 (교사, 원장)	- 본 사업의 참여 동기 - 놀이학습공동체운영 사업 적용 및 변화 과정 - 놀이학습공동체운영 사업 참여를 통한 보육교직원의 역량 향상도 - 향후 계획 및 활성화 방안
육아종합지원센터	- 본 사업의 참여 동기 - 사업 안내 및 참여자 홍보 과정 - 놀이학습공동체 소모임 운영 목적 및 방향(취지) - 사업 적용 및 지원 과정 - 사업의 확장 및 지속가능성 - 지역사회 및 기관과의 소통 및 연계 (도 센터 및 기타 기관과의 소통 및 연계) - 향후 계획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

○ (포상유형 및 수량) 이하 포상 대상 및 제외 대상 확인

구 분	내 용	비 고
어린이집	기관 3점	경기도지사상 수여
보육교직원(교사, 원장)	개인 5점	
육아종합지원센터	기관 2점	

※ 응모 작품 및 심사 결과에 따라 포상 내역이 조정될 수 있음

□ 유의사항

- 2021년 놀이학습공동체운영 사업 미참여 어린이집 및 개인은 응모 불가함
- **제출 형식 및 제출 분량 준수 요함, 미준수 시 감점될 수 있음**
- 제출 기한 내 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심사
- 제출작은 서류심사 시 활용되며, 수상작에 한하여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1년 간 홈페이지 게시, 책자 제작·배포, 1회의 설명회 발표를 함에 동의하여야 함
- 사진 첨부 시 : **해당 제출자 및 기관 내 초상권 관리 필수**
- **최근 2년 이내(2019-현재)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응모 불가함**
(※선정 결과 통지 후 증빙서류 제출/미제출 시 선정 취소)

★ 포상 대상

- <경기도지사 상장>

- * **동일한 분야(공모전)로 도지사 이상 포상 수여 후 1년이 지난 기관 및 단체**
- * **도지사 이상 포상 수여 후 2년이 지난 개인(공적 분야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)**

★ 포상 제외 대상

- ▶ (공통)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
- ▶ (공통)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(불문경고 포함)을 받은 사람 중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
※ 말소기간 :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, 정직 7년, 감봉 5년, 견책 3년, 직위해제 2년, 불문 경고 1년 등
- ▶ (공통) 주요비위*로 인한 징계·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
* 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 제5조 제2항 제1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로서 금품 향응·수수 및 제공, 예산 및 기금 등 횡령·배임·절도·사기·유용,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, 음주운전,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·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등
- ▶ (공통) 기타 공·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, 부조리 등으로 물의(민원)을 일으켜 도지사 포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
※ 단,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,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
- ▶ (민간인, 기관·단체)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, 동법시행령 제8조의 4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하여 추천을 제한

□ 문의사항

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031-258-1485/내선5 이도은